

선거관리규정

선거관리규정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대한산업보건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에서의 임원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협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선거관리 의무) ① 협회는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에 직·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

제3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)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선거 10일 이내에 설치하며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산한다. 다만, 총회의 결정에 따라 해산일자를 연장 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회의 운영)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필요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5조(위원 구성) ① 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간사는 본부 **인재경영팀장**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<개정 2016.12.06>

1. 최초의 위원회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협조
2.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
3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위원회 업무) ① 위원회의 업무는 각 호와 같다.

1. 선거공고 및 관련사무
2. 선거인명부
3. 후보자 등록

4. 선거 및 관련사무

가. 투·개표 관리

나. 선거 및 이와 관련된 사안의 심사·처분 및 결정

다.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

7. 당선인 확정

8. 선거관리규정 위반자 감시 및 제재

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.

1. 선거일

2. 후보자의 등록 및 절차

3. 선거 절차 및 투표 방법

4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

③ 선거공고는 협회 홈페이지 또는 협회 정기간행물 등이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한다.

④ 선거공고는 선거공보의 세부사항을 포함한다.

제 3 장 선거일과 선거인

제7조(선거일) ① 회장 또는 임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정기(임시)총회에서 실시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을 차기 총회로 연기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하여 선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기된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선거인) 선거인은 총회에서 정한 회원으로 한다.

제9조(선거인명부) ①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.

② 선거인명부는 선거 공고일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이때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선거인명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

③ 선거인명부의 공고내용과 열람방법, 열람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우편,

기타 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1회 공지한다.

제 4 장 선거 및 투표

제10조(선거방법)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하고, 총회에서 무기명, 비밀투표로 선출한다.

제11조(투표소) 위원회는 선거 실시전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좌석
2.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
3. 투표함
4. 기표소
5.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

제12조(투표용지) ① 투표용지의 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.

- ②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병기한다.
- ③ 위원회는 선거 실시 전 투표용지 직인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투표용지는 투표용지관리대장(별지 제3호 서식)을 사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.

제13조(투표절차) ① 투표는 투표 장소에서 위원회 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아래 선거인 명부와 대조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용지에 ⊙표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.

- ②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라도 재교부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(위임장)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일 7일전까지 선거인에게 위임장과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서(별지 제4호 서식)를 우편 발송한다.
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임장을 접수할 때에는 투표용지관리대장(별지 제3호 서식)에 접수에 관한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③ 위임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.

제15조(참관) ① 참관인은 투·개표상황을 참관하여야 한다.

② 참관인은 선거당일 회원 중 호선하여 2인 이내로 선임한다.

제 5 장 개표 및 당선확정

제16조(개표관리) ① 개표는 참관인의 입회아래 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다.

② 개표된 투표용지는 당선확정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(별지 제6호 서식)이 없으면 폐기한다.

제17조(무효투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처리한다.

1.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2.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
3. 2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
4.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
5.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
6.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
7. 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.

1.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위원회의 기표용구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백한 것
2.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
3.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
4.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
5.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
6. 훼손되었으나 정규 투표용지가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

제18조(당선확정)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직접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(별지 제7호 서식)한다.

② 임원 선출 시 1차 투표에서 출석회원 **과반수를 득표한** 후보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(별지 제2-1호 서식)를 **실시한다**.

<개정 2016.12.06>

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1위 득표자가 출석회원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, 1위 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며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을 경우 당선을 확정한다. <신설 2016.12.06>

제 6 장 기타사항

제19조(공고의 방법) 이 규정에 의한 공고(별지 제8호 서식)는 협회 홈페이지(www.kiha21.or.kr)를 이용한다.

제20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 규정의 효력의 불소급) 이 규정은 종전의 내규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(의결일 : 2016.12.06.)

○○○○지부 선거인명부

순번	성명	소속기관	주소	우편번호	연락처	비고

주 : 1. “주소”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소속기관의 주소나 거주지의 주소를 통리·반 번지(아파트 등은 동·호수까지, 사서함번호가 있는 경우는 사서함 번호까지)까지 자세히 기록합니다.

2. 성명은 한글로 기재합니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투표용지 규격

20년도 정기(임시)총회 투표용지

임원 선출 (회 장)		
1	홍길동 (洪吉童)	
2	김철수 (金哲秀)	

확 인
직 인

20

대한산업보건협회

※ 주 : 투표용지의 규격은 가로 7cm × 세로 15cm로 한다.

색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[별지 제2-1호 서식]

투표용지 규격(결선투표)

결선투표용지				
임원 선출 (회 장)				
1	후보자1			
2	후보자2			
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<tr><td style="padding: 5px;">확 인</td></tr><tr><td style="padding: 20px 0 0 0;">직 인</td></tr></table>			확 인	직 인
확 인				
직 인				
20				
대 한 산 업 보 건 협 회				

※ 주 : 투표용지의 규격은 가로 7cm × 세로 15cm로 한다.

색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투표용지 관리대장

1. 투표용지 관리 현황

지부명	선거인명부상 선거인수	투표용지 매수	확 인 자(위원장)		확 인 자(간사)	
			성 명	서 명	성 명	서 명
서울						
경기						
대전충남						
충북						
광주전남						
전북						
대구경북						
부산						
울산						
경남						
강원						
인천						
계						

2. 투표용지 접수 현황(대장)

연번	성명	소속기관	수입자성명	투표권매수	서명

- ※ 주 1 : 투표용지 접수 시 당해 선거관리위원장 혹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지정한
참관인 2인 이상이 입회를 할 수 있다.
- 2 : 개표참관인은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투표용지 접수과정을
참관할 수 있다.

[별지 제4호 서식]

투표방법 안내서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처리한다.

1.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2.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
3. 2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
4.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
5.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
6.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
7. 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

[별지 제6호 서식]

이 의 신 청 서

1. 소 속 :

2. 이의신청내용:

가. 신청일자 :

나. 신청인 :

① 주 소 :

② 성 명 : (인)

다. 신청사항 :

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개 표 결 과

재적회원	명
출석회원	명
출석회원 과반수	명

선 출 임 원	선거인수 (가+나+다)	투표수 (가+나)	유 효 투 표 수 (가)				무 효 투표수 (나)	기권수 (다)	비고
			후 보 자 별 득 표 수						
			○○○	○○○	○○○	계			
회장									
부회장									
상임이사									
비상임이사									
상임감사									
계									
결 과	○○○ 후보가 회장(부회장, 상임이사, 비상임이사, 상임감사)에 선출 되었습니다.								

이 개표결과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.

년 월 일

선거관리위원장	① 선거관리위원	①
선거관리위원	① 선거관리위원	①
선거관리위원	① 선거관리위원	①
선거관리위원	① 참 관 인	①
참 관 인	① (작성자)간사	①

[별지 제8호 서식]

당선인 결정공고

년 월 일 실시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()

선거에 있어 다음의 후보자가 당선 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.

년 월 일

선거관리위원장

당선인 인적사항

당선직위	성명	생년월일	주소(도로명 번지 또는 동까지만 기재)	비고
		. . .		